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체·제조업체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정비 및 기타 조문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 변동 기산점 개선(안 제27조 제2항, 제73조제1항개정, 제7항 신설)

- 1)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 필요
- 2)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물가변동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
- 3) 계약상대방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장함으로써 업체부담 완화 기대

나.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항 개정)

- 1) 순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 가능하나 1% 초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 다수 발생하여 요건 완화 필요
- 2)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3)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기대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 개정)

- 1) 녹색기술제품 등의 경우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관련 법령에서 인증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근거가 없어 타 제품에 준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2) 녹색기술제품 등 4종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개정)

- 1)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명시되지 않아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해석중으로 명확히 할 필요
- 2)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 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제한경쟁입찰 대상 녹색제품 범위 확대(안 제20조제1항 개정)

- 1) 녹색제품구매법 적용범위에 속하는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 제품이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이 추가되어 제한경쟁입찰 대상에도 반영할 필요
- 2)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추가
- 3)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금액”을 “금액 중 정부조달협정 금액(대상기관 중 자치구·군 적용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제10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제25조 제1항 제4호 제마목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타목에서 “물품 등”을 “물품”으로 하며 제6호 제라목에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11)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

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12) 「산업융합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단,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한함)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물산업수수기자재 지정제품

제25조 제1항 제7의2호에서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
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신설하며 차목 “시행령 제8조의2 제1
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에서 단서조항 “다만, 수의계약 체결 시 제73조에 따른 계약금
액 조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한다.

제73조 제1항에서 “체결(장기계속공사와)”를 “체결(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된 종전 계약의 체결을 말하며, 장
기계속공사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를 ‘입찰일(2차“로 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6항의 ”입찰일“을 ”계약체결
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일“을
”해제 또는 해지된 종전 계약의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
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로 본다.

제74조 제3항에서 “조정금액”을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계약금액”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 자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생략)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u>금액</u> 을 말한다. 4.(생략)	제2조(정의) ----- ----- 1.2.(현행과 같음) 3.----- ----- <u>금액 중 정부조달협정 금액(대상기관 중 자치구·군 적용금액은 제외한다)</u> ----- 4.(현행과 같음)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6. (생략) ③ (생략)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삭 제> ----- ----- ----- ----- 2.~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생략) 1.~9. (생략) 10.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 ----- -----

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하.(생략) 5.(생략)	-----<u>물 품</u>----- ----- ----- ----- 파.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다. (생략)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 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 1)~9) (생략) <신설> 7. (생략)	6..----- -----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 ----- ----- ----- ----- ----- ----- ----- 1)~9) (현행과 같음)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11)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단, 중소기업에 생산한 제품에 한함)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7. (현행과 같음)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	7의2.-----

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다. (생략) <신설>	----- ----- -- 가.~다. (현행과 같음) <u>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u>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자.(생략)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③(생략)	8. ----- ----- ----- ----- 가.~자. (현행과 같음) 차.----- -----<u>제20조제3항</u> ----- ----- ②,③(현행과 같음)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 . 다만, 수의계약
체결 시 제7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 체결(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된 중
전 계약의 체결을 말하며, 장기계속공
사와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
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
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
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
상 증감된 경우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_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
·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
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
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
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

1. 입찰일(2차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000분의 5를 -----

-----.

⑦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6항의 “입찰일”을 “계약체결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

⑦ · ⑧ (생략)	<u>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일”을 “해제 또는 해지된 종전 계약의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로 본다.</u>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생략) ③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u>조정금액</u>이 원래 <u>계약금액</u>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⑨(생략)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u>-----<u>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u>--- ----- ----- ④~⑨(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3

